

울산광역시 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| | |
|--------|---------|
| 선 람 | 기 관 의 장 |
| | |



제630호 2010. 3. 29. (월)

공 고

- 공고 제2010-227호 [공인등록 공고]..... 2
- 공고 제2010-228호 [공시송달 공고]..... 4

【 안 내 문 】

-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
 ⇒ 구 홈페이지(<http://www.bukgu.ulsan.kr>) → 행정정보 → 일립미당 → 북구공보에서 열람

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람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

발행: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: 문화홍보과(☎ 219-7207 행정 7207)

공 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공인 조례」 제6조 및 제11조에 의거 등록·폐기한 공인을 「울산광역시 복구 공인 조례」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3월 29일

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





- 신규공인 최초사용 가능일 : 2010년 3월 29일
- 등록 공인

| 전자이미지 공인명 | 규격(cm) | 서 체 | 인 영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|
| 울산광역시복구세무과 분임경리관인 | 2 × 2 | 한글전서체 | |
| 울산광역시복구세무과 일상경비출납원인 | | | |
| 울산광역시복구경제진흥과 분임경리관인 | | | |
| 울산광역시복구경제진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| | | |
| 울산광역시복구교통행정과 분임경리관인 | | | |
| 울산광역시복구교통행정과 일상경비출납원인 | | | |

□ 폐기대상 공인 폐기일 : 2010년 3월 29일

○ 폐기 공인

| 전자이미지 공인명 | 규격(cm) | 서 체 | 인 영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|
| 울산광역시북구경제교통과 분임경리관인 | 2 × 2 | 한글전서체 |  |
| 울산광역시북구경제교통과 일상경비출납원인 | | |  |

공 시 송 달 공 고

1. 식품위생법 위반(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등)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(영업소 폐쇄)에 앞서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가. 위반 및 공시송달 내역

| 업 종 | 업소명 | 대표자 | 소 재 지 | 위반사항 | 예 정 된 행정처분 |
|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일반음식점 | 알로하 | 하정화 | 정자동 435 |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| 영업소폐쇄 |
| 일반음식점 | 안동손두부 | 이홍미 | 상안동 412-9 |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| 영업소폐쇄 |
| 일반음식점 | 국일Hits | 서학수 | 호계동 282-7 |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| 영업소폐쇄 |
| 식품소분업 | CJe마트 | 김정숙 | 신천동 312-1외10필지 |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| 영업소폐쇄 |
| 기타식품 판매업 | CJe마트 | 김정숙 | 신천동 312-1외10필지 |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| 영업소폐쇄 |

나. 공고기간 : 2010. 3. 29. ~ 4. 12.

다. 청문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(☎ 052-219-7364/7374)

2. 위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 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(영업소폐쇄)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10년 3월 29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